

2024년 제2회 화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4년도 제2회 화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화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예정인원	비고
2024년 제2회 화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공업	일반기계	2	
		농지	산림자원	1	
		해양수산	선박항해	1	
		보건	보건	1	
		의료기술	의료기술 (치과위생)	1	
		시설	건축	1	
일반토목	2				

2. 시험절차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홈페이지 공고 : 2024. 11. 08. ~ 2024. 11. 18(11일간)응시원서 접수 : 2024. 11. 19. ~ 11. 21.(3일간)
1차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격요건 심사 ※ 자격증 등 자격요건 심사
2차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험과목 :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1차-2차 시험 병합실시)
3차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나.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직렬 및 직급	직류	시험과목		시험시간
		1차	2차	
공 업(9급)	일반기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60분
녹 지(9급)	산림자원	생물	조림, 임업경영	60분
해양수산(9급)	선박항해	물리	선박일반, 항해	60분
보 건(9급)	보 건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60분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치과위생)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60분
시 설(9급)	건 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60분
	일반토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60분

※ 시험문제는 화천군에서 자체출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평가기준 : 5개 항목(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라. 합격자 결정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거주지 제한 : 제한사항 없음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 10. 31. 이전 출생자)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2024년 제2회 화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산림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해양수산	선박항해	5급 항해사(상선) 이상
		보건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간호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치과위생)	치과위생사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2024년 제2회 화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 기준으로 합니다.
-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5. 시험일정(예정)

시험공고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24.11.08.(금)	2024.11.19.(화)	서류전형	-	-	2024.11.27.(수)
~	~	필기시험	2024.11.27.(수)	2024.11.30.(토)	2024.12.04.(수)
2024.11.18.(월) (11일간)	2024.11.21.(목) (3일간)	면접시험	2024.12.04.(수)	2024.12.10.(화)	2024.12.13.(금)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은 화천군 홈페이지(<http://www.ihc.go.kr>)[채용공고]란에 공고할 예정이며, 개별통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일정은 응시 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1. 19.(화) ~ 2024. 11. 21.(목), 09:00 ~ 18:00

나. 접수처 : 화천군청 자치행정과(2층)

- 우편주소 : [2412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FAX 제출 불가)

등기우편 접수 시, 겹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 등기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상당)」를 구입 후 동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 11. 21.(목)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현금 동봉 X)
- ※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응시표는 휴대폰 문자 등 별도 방법으로 고지·송부 합니다.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붙임 1]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cm × 4.5cm) 탈모상반신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 등기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 응시자는 화천군 수입증지(5,000원권) 구입 후 원서제출 (구입처 : 화천군청 1층 민원봉사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2)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3)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4) 이력서[붙임 2] 1부

5) 자기소개서[붙임 3] 1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4] 1부

7)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붙임 5] 1부

7. 응시원서 접수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가정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공통적용 가산점 제도(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등)는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제2회 화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직렬별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됩니다.

8.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가. 응시원서 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제출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다.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라. 필기시험(1·2차 병합)의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합격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면접 시험 응시 가능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각 과목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 마.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사항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의미합니다..
-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계획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필기시험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화천군에서 자체출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자.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차.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화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카. 본 시험계획 합격자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가 준용되지 않으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진출이 제한됩니다.
- 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파.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 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시행 7일 전까지 화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33-440-22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